

직업이음센터 운영규정

2026. 08. 10. 최초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직업이음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관리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 및 사업) 센터는 직업이음 대상자와 소외계층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대상자의 자립환경 제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과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직업이음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
2. 소외계층·다문화가족 지원 전략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
3. 직업이음/취약계층 관리에 관한 사항
4. 서로이음·온이음·다시이음 지도 및 상담에 관한 사항
5. 직업이음 프로세스를 통한 직업찾기 정보제공 및 추천에 관한 사항
6. 직업이음 서비스모형 개발 및 선도모델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
7. 직업이음/취약계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소외계층·다문화가족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9. 직업이음 관련 정부 및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10. 서로이음·온이음·다시이음 지도 이력 및 D/B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11. 취약계층 동향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
12.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13. 기타 직업이음 및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구성) ①센터에는 직업이음센터장, 직원,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센터는 진로상담 또는 심리상담, 전문상담 및 업무개선 등을 위해 필요시 내·외부전문상담원, 시간제 상담원, 사회복지 및 상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센터운영의 효율성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「직업이음 운영위원회」를 둔다.

②직업이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직업이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임무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직업이음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운영규정의 제·개정
2. 직업이음 및 취약계층 지원 관련 운영 결과 분석·환류·개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

항

3. 직업이음 및 취약계층 지원 향상에 관한 사항
4. 내·외부의 직업이음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(프로그램)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운영지침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은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/활용) 직업이음센터 운영 평가는 1년 단위로 실시하고, 각 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하여 차기년도 사업 개선에 반영·활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센터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.